

부 록

1. 연합 헌장 • 455
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460
3.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462
4. 해외 회원단체 파견공무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 • 464
5. 해외단체 파견직원 현황 • 466

부 록

1. 연합 헌장

전 문

국제사회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의 대표들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채택에 동의하고,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1장 기구의 명칭 및 목적

제1조(명 칭) 이 기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이하 “연합”으로 표기함)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이해에 입각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업) “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총회)의 정례적 개최
- ② 지역간 경제·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③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의 지원 및 추진
- ④ 기타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의 범위 및 권리·의무

제4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회원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등 자치단체 중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광역 지방 자치단체로 하되,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헌장이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직 및 기능

제1절 총회

제6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제7조(임원) 총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차기총회 개최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단, 의장 유고시 직무는 소속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 (2) 감사는 각 국당 1인으로 하며,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제1호와 같다.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감사의 선출
-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 (4) 회비의 결정
- (5) 연합 헌장의 개정
- (6)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 (7)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 (8) 사무국 설치장소 결정
- (9)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사결정)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회원자치단체는 각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2) 제8조제1호 내지 제8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제9조제2호 이외의 기타 조항에 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운영)

- ①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실무 위원회 주임(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주임(위원장)은 의장회원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 ③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에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 ④ 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실무 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개별 혹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98.9신설)

제11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 (2)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3) 회원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 (4)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결정 ('98.9신설)
-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사무국

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①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국의 임원과 직원은 “연합”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예산편성 및 집행
- ②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③ 회원자치단체간의 업무연락 및 조정
- ④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재정)

- ① 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자치단체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잠정적으로 회비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분담한다.
 - 가. 경비총액(A)의 반액(B)은 회의 개최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나. 나머지 반은(C=A-B)는 회의개최 자치단체를 뺀 연합회원자치단체 수(D)를 균등하게 나눈 액(C/D)을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 다.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수가 D를 하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은 회의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라. 회원자치단체는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부담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 마. 총회 시 차기 총회개최지에 입후보하는 자치단체는 개최할 총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경비의 잠정 회계를 제출해야 한다.
3.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이 설치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4절 연합지원기관

제16조(설 치)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각 자치단체는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연합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98.9 신설)

제17조(등 록)

1. 회원자치단체가 연합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원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연합에 등록할 수 있다. ('98.9 신설)
2. 연합지원기관은 그 활동상황을 연합에 보고한다. ('98.9 신설)

제4장 최종규정

제18조(효 령)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창립회원은 1996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 참석하여 본 헌장의 기본정신에 동의한 자치단체로 한다.

제20조(언 어) 이 헌장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조선)어,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정본은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의 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사본은 각 회원자치단체에 보관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자치단체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부 칙

이 헌장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헌장 제 1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1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서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 혹은 과제 (이하 개별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2) 환경분과위원회
- (3)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08. 9. 2. 통합)
- (4) 방재분과위원회
- (5) 변경·협력분과위원회('04. 9. 5)
- (6) 과학·기술분과위원회('06. 9. 14)
- (7) 해양·어업분과위원회('08. 9. 2)
- (8) 관광분과위원회('08. 9. 2)

제3조(기능)

1. 각 분과위원회는 제안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방법 등에 대해 검토 협의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참여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별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검토 협의한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자치단체 담당부·국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1. 각 분과위원회에 호선에 의해 분과위원회의 연락, 조정, 운영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이하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라고 한다)를 둔다.
2.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을 막지 않는다.
3.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통신방식(우송, 팩시밀리 등)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참가)

1. 분과위원회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각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에 참가 신청을 한다.

2.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해당 분과위원회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무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비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트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교통비 및 제재비는 원칙적으로 회의참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연합사무국과의 관계)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사무국에 송부하고, 사무국은 분과위원회 구성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규정에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효력) 이 규정은 2008. 9. 2.부터 효력을 가진다.

3.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의 상설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사무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로 하며, 그 명칭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위치) 사무국의 주된 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소재지로 한다.

제4조(사업)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산편성 및 집행
2.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회계보고서의 작성
3. 총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4.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수행지원
5. 분과위원회 활동지원
6. 연합의 장기계획안 작성, 조정
7. 연합발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8. 연합홈페이지 운영
9. 회원단체간 업무연락 및 조정
10. 연합관련자료 정리, 정보분석 제공
11. 지역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12. 연합 정보지 발간 등 대외홍보
13. 기타 총회의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사무국의 사무총장은 동북아연합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국제관계전문가로 한다.

제6조(재정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 ① 사무국은 다음연도 3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무국은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무국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 ① 도지사는 사무국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의 업무지원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해외 회원단체 파견공무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1.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라 한다)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해외 회원단체 공무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해외 회원단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NEAR 회원단체 중 사무국 소재지 이외 국적자가 소속 자치단체의 명에 의거 NEAR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은 NEAR 사무국 자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파견공무원 자격

제3조(자격) 파견공무원은 NEAR 회원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고 NEAR 사무국 사무총장이 선정한 자로 한다.

제4조(파견인원) NEAR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는 인원은 각 국별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 개최 준비 등 현안업무 추진 등에 추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NEAR 사무국 사무총장이 인정할 경우 해당 회원단체와 협의하여 파견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파견기간)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 파견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제6조(사무국에서 직위) 파견공무원은 NEAR 사무국의 직원으로서 근무한다.

제3장 근무에 관한 사항

제7조(신분) 파견공무원은 NEAR 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은 사무국 소속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며 사무국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파견공무원은 NEAR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하며 구체적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NEAR 회원자치단체와 업무연락
2. NEAR 사무국 프로젝트 추진
3. NEAR 사무국 업무 통·번역

4. NEAR 홈페이지 관리

5. 기타 NEAR 사무국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고서 작성) 파견공무원은 NEAR 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추진한 업무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유양식에 따라 매 월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휴가) 파견공무원은 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 업무외 허가) 파견근무자는 NEAR 사무국 업무이외의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사무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파견공무원은 NEAR 사무국 소재지 국내법을 지켜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파견공무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3조(복귀) NEAR 사무국 사무총장은 파견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는 파견공무원 소속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1. 개인 건강 악화 및 기타 사유로 현지 생활이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무국 업무 추진에 심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동 규정 제7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사무국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4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경비부담) 파견근무자의 급여, 생활비 및 현지 생활에 필요한 보험 등은 파견근무자 소속 회원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사무국 지원) NEAR 사무국에서는 파견근무자가 현지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단, 제2호는 각 국의 소득격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주택 제공
2. 현지 생활비 일부 지원 : 매월 한화 80만원
3. 현지 생활에 필요한 비품 제공 : [별표 1]과 같음
4. NEAR 사무국 업무에 필요한 사무 비용

제16조(변상조치) 파견근무자는 NEAR 사무국에서 제공한 주택 및 생활 비품을 선량이 관리할 의무를 지며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분실 또는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단, 소모품은 제외한다.

부 칙(2007.1.15)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해외단체 파견직원 현황

1. 2006년도 파견직원

국 가	자치단체명	파 견 직 원
중 국	닝시아에이쭈자치구	마 위치(남)
일 본	미파견	
몽 골	투브아이막	제렌돈도프 다시제베그(남)
러시아	브라티아공화국	알렉산드르 만구토프(남)

2. 2007년도 파견직원

국 가	자치단체명	파 견 직 원
중 국	산둥성	쉬리란(여)
일 본	시마네현	나카미치 히로야키(남)
몽 골	셀렝게아이막	바타르자우 벌러르(여)
러시아	뜨이바공화국	몬구쉬 메르겐 바르찌자노비치(남)

3. 2008년도 파견직원

국 가	자치단체명	파 견 직 원
중 국	호북성	쨥아이췌(여)
일 본	시마네현	나카미치 히로야키(남)
몽 골	드르노드아이막	첸드 몽흐차츠랄(여)
러시아	사하공화국	쁘르또쁘쁘쁘 발레리 니콜라에비치(남)